

2. 국가원수인가, 정부 또는 군의 장인가, 책임이 있는 공무원인가를 묻지 않고, 피고인의 공직 지위에 의해, 그 피해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형벌은 경감되지 않는다.

제6조 지휘·명령계통에 있어서의 형사책임

1. 상관은, 부하가 본「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행위를 행하려고 하거나, 행한 것을 알거나 또는 알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처벌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가 부하에 의해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이유로, 그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

2. 피고인은,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그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 다만, 본법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의 경감에 있어서,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 국가책임

1. 국제사회의 기본적 이익을 위해 불가결한 국제적 의무이고, 그 위반이 국제사회 전체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을 국가가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범죄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성노예제, 제노사이드금지과 같은, 인간 특히 여성의 보호를 위해 불가결의 중요성을 가지는 국제적 의무의 대규모적이고 중대한 위반이 포함된다.

2. 국가는, 본「규정」 제2·3조 및 본조 1항의 범죄에 관해 의도적인 사실의 인멸 혹은 합리적 기간을 넘어서는 책임자의 불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불이행 등,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국가책임의 해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추가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 영역적, 시간적 재판관할권

1. 본법정의 영역적 관할은, 한반도, 중국 등 동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2. 본법정의 시간적 관할은,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부터 범죄의 영향이 인정되는 현재까지 미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시효의 부적용

본법정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 법정의 구성

본법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그 선임은, 본법정국제실행위원회가 兩性の 공정한 비율을 고려하여 행한다.

- (a) 재판관
- (b) 검찰관
- (c) 서기국

제11조 재판관

1. 재판관은 12명으로 하고, 그 선임은 본법정국제실행위원회가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행한다.

- (a) 과반수를 여성으로 한다.
- (b) 공정한 지역적 분배.
- (c) 여성의 인권확립에 다대한 공헌을 하고,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

(d) 국제형법,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사람.

2. 재판장 및 부재판장은,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해 선임된다.

제12조 검찰관

1. 검찰관은, 3명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수석검찰관으로 한다. 그 선임은 본법정국제실행위원회에 의해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행한다.

(a) 과반수를 여성으로 한다.

(b) 공평한 지역적 분배.

(c) 국제형법,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사람.

2. 검찰관은, 본「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국가의 조사·소추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검찰관은 사건에 대해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든 情報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조사를 개시한다.

제13조 서기국

서기국은, 본법정의 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4조 증거(검토중)

본법정은, 아래의 증거를 최대한 수리한다. 이것들은 법정기록의 일부를 구성한다.

(a) 서증 : 공문서, 공술서, 서명이 있는 진술서, 일기, 書狀, 감정서, 기타의 문서, 영상.

(b) 인증 : 피해자 증언, 구술, 감정증인

(c) 물증 :

제15조 공판절차의 개시 및 진행

1. 본법정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한다.

2. 심리는 공개로 행한다.

3. 본법정의 공용어는 영어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언어로 통역·번역한다.

4. 본법정은, 피고인에게 출정을 요청하고, 기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확보한다.

5. 피고인이 출정할 수 없거나, 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본법정은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을 선임한다.

제16조 피고인의 권리

1. 모든 자는, 본법정 앞에 평등한 것으로 한다.

2. 피고인은, 본「규정」 제17조에 기초하여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피고인은 변호인에 의해 대리될 권리를 가진다.

4. 피고인은, 본「규정」에 기초하여 유죄가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17조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참가)

1. 본법정은,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에 노력한다. 이와같은 보호에 관한 조치에는, 비공개 절차 및 피해자의 신원관계 사항의 보호가 포함되지만, 이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본법정은, 성폭력에 관한 범죄의 성질을 고려하여, 피해자 및 증인의 안전, 신체적·심리적 권리, 존엄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들 조치는, 피고의

권리 및 공정하고 공평한 심리에 반해서는 안된다.

제18조 판결

1. 본법정은, 본「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해 유죄라고 인정된 개인, 국가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2. 판결은,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고, 공개된 곳에서 언도된다. 판결에는, 서면에 의한 이유가 첨부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이유에 대해 개별 또는 반대 의견을 붙일 수 있다.

3. 본법정은, 유죄라고 인정된 개인 및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에는, 원상회복, 손해보상, 리허빌리테이션 등을 포함한다.

제19조 형벌

본법정은, 아래의 형벌을 과할 수 있다.

- (1) 30년 이내의 유기금고형 또는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종신금고형
- (2) 벌금
- (3) 재산몰수
- (4)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교육훈련

제20조 판결의 집행

1. 본법정은, 국가주권에 의한 재판과 달리, 판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2. 판결은 피고 본인 혹은 대리인, 일본정부, 관계 각국정부, 국제연합고등인권판무관 등을 비롯한 국제기관에 송부하고, 나아가 널리 세계에 공표하여, 후세의 역사에 기록으로 남긴다.

-----*

이 초안은, 「토오쿄오재판헌장」, 구유고 및 르완다 국제전범법정「규정」, 국제형사재판소「규정」, 국제연합국제법위원회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죄의 법전초안」 등을 참고하고, 변호사,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VAWW-NET Japan이 작성했다.

* 「규정」인가 「규약」인가 「헌장」인가 「조례」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토오쿄오재판, 뉘른베르크재판의 경우 원문은 Charter 「헌장」이고, 일본정부의 번역은 「조례」이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구유고, 르완다법정은 Statute이며, 이에 대해서는 「규약」 「규정」 두가지의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 적용할 법(국제, 국내법)은? 재판관의 재량인가?

* 제7조 「국가책임」은 국제연합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책임조문초안을 참고했다.

* 제14조 「증거」의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